
보도자료

- 제공일 : 2004. 3. 10.
- 제공자 : 농림부 협동조합과
- 과 장 : 김 종 훈
- 사무관 : 류 이 현
- 전 화 : 500-1688, 1692

이 자료는 2004년 3월 10일 (석간)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농림부, 교하농협에 사업정지 조치

- 농림부는 예금인출사태로 예금채권의 지급 정지상태에 있는 교하농업협동조합(과주시 교하읍 소재)에 대해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(농협구조개선법)에 따라 '04.3.10일자로 조합의 사업을 정지시키고, 조합장 등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.
- 교하농협은 지난 2월 26일 대의원회에서 조합해산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조합해산을 우려한 예금자들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560억원의 예금을 찾아가는 예금인출사태가 발생, 3월 9일부터 예금지급이 정지된 상태이다.
- 예금인출사태를 촉발시킨 조합원들의 조합해산 추진은 최근 금융 및 RPC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, 직원노동조합과 농민조합원간에 마찰을 빚는 등 조합원들의 조합운영과 조합직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.

□ 농림부는 이번 경영개선명령 조치와 관련, 교하농협의 영업이 계속될 경우 발생할 추가적인 예금인출사태를 방지하고, 예금자와 조합원에게 미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정지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.

○ 농림부는 교하농협에 대한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간('04. 3. 10~'04. 9. 9)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 정지되나, 조합의 재산을 실사한 후 정상화하거나,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**계약이전** 방식으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인근 우량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**예금과 공제계약은 전액 보장**되어 예금자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.

□ 한편, 농림부는 사업정지 기간중에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농협에서 **예금담보대출**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,

○ **영농자재 판매** 등 교하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사업은 관리인의 판단으로 계속 운영하여 영농기를 맞은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.

□ 농림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고객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교하농협의 사업정지에 대한 사후 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며, 조합재산에 대한 실사 등 업무처리를 위해 관리인 등 농협중앙회직원을 '04. 3. 10(수) 08:00 교하농협에 파견했다.